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343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한 마약류검사 실시 등	3

I. 개요

1.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034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영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7. 31.

(3) 회 부 일 : 2026. 8. 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의 결격사유로 마약류 중독자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시 마약류 중독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허가·지정 이후 마약류취급자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도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에 한하여 필요한 때에만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검사할 수 있을 뿐, 불법 사용을 적발할 수 있는 마약류 검사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마약류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및 제64조제17호의2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한 마약류검사 실시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의 불법 투약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타액 간이검사 등의 방법으로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대상자에게 검사응낙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소변 등을 이용한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또한,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마약류검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제64조 제17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1조의2(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한 마약류검사의 실시) ① 사법경찰관리는 마약류의 적정한 취급·관리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제3조·제4조 및 제5조제1항을 위반(제3조·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흡연·섭취하거나 자신에게 마약류를 사용 또는 투약한 경우에 한한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무에 종사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7. (생략) <u><신설></u> 18. ~ 20. (생략)	<u>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취급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타액 간이 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마약류의 투약 여부를 검사(이하 “마약류검사”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등은 사법경찰관의 마약류검사에 응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마약류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마약류취급자등에 대하여는 그 마약류취급자등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다시 검사할 수 있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제64조(벌칙) ----- ----- -----. 1. ~ 17. (현행과 같음) <u>17의2.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제3조·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마약류검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u> 18. ~ 20.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마약류중독자를 일정한 마약류취급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허가·지정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지정 이후 마약류취급자 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불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를 직접 검사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음.
- 또한, 현행 제41조는 관계 공무원이 마약류취급자의 업소·공장·창고·약국 등에 출입하여 서류·의약품·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고 마약류·원료물질 등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마약류취급자 등의 신체에서 타액·혈액·소변 등을 채취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상 마약류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고, 이들의 불법 투약이 마약류의 유통·유출이나 중독 상태에서의 조제·투약 등으로 이어질 경우 국민보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 투약을 조기에 확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리가 구체적인 마약류 범죄혐의를 전제로 생체시료를 검사하고,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마약류검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과 마약류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유사사례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 및 시행예정법상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는 군인·경찰공무원,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자동차 등의 운전자 등이 있음.

□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3¹⁾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하여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027년 2월 시행예정인 「경찰공무원법」 제22조의2²⁾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항공안전법」 제57조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에게 주류·마약류 등의 사용 여부에 관한 측정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고 측정불응을 처벌하고 있으며³⁾, 「도로교통법」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을 실시하고

-
- 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3(마약류 투약 등 검사)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마약류 투약 등 검사) ② 마약류 검사는 연 1회 이상 예고 없이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연간 마약류 검사를 하는 인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대별·기관별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 2) 「경찰공무원법」 제22조의2(마약류검사 실시)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마약류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마약류검사의 실시대상, 실시의 시기·주기·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7.2.28. 시행예정>
- 3) 「항공안전법」 제57조(주류등의 섭취·사용 제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호흡 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이러한 측정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제3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또는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⑤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제146조(주류등의 섭취·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2.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3.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측정불응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⁴⁾.

- 이러한 입법례는 특정한 직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일정한 경우 검사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이러한 검사대상인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총기 등 무기를 소지·사용하거나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직무수행이 국민의 생명·신체 및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항공종사자 및 운전자의 경우에는 약물의 영향 아래 해당 업무나 운전을 수행하면 타인의 생명·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한편, 개정안의 대상인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군인·경찰공무원 또는 항공종사자·운전자와 같이 마약류 사용으로 인한 즉각적인 안전상 위험을 수반하는 직무를 수행한다고 일률적으로 보기는 어려움. 그러나 업무상 마약류에 접근하기 쉽고, 불법 투약이 마약류의 부적정한 취급이나 불법 유출, 중독 상태에서의 조제·투약 등으로 이어질 경우 국민보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관리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마약류검사제도의 도입 여부는 이러한 유사

4)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제148조의2(주류등의 섭취·사용 등의 죄)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입법례의 도입 목적 및 검사대상의 직무상 특성과 함께, 마약류취급자 등의 불법 투약 발생 가능성, 검사의 실효성과 피검사자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검사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여 제도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의 “불법 투약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검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건이나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는 악의적인 민원이나 제보 또는 단순한 정황만으로 검사가 실시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범죄혐의 등 검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유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의료인의 마약류취급·처방 이력이나 단순한 신고·민원 등이 검사 사유로 폭넓게 활용될 경우 정당한 의료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였음.

□ 따라서 마약류에 대한 접근 가능성 및 불법 투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등을 고려하되,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사 실시 사유를 구체화하고, 검사 사유를 대상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검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검사불응 처벌의 필요성과 처벌요건, 법정형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검사대상자에게 검사응낙의무만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를 두지 않으면 검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검사불응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음. 「항공안전법」과 「도로교통법」에서도 일정한 요건 아래 검사 또는 측정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고 측정불응을 처벌하는 입법례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불법 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 불응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검사 대상자의 기본권 제한을 형사처벌과 연계하여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대한약사회는 건강상의 사유 등으로 검사에 응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한편, 개정안의 검사응낙의무 위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항공종사자와 운전자의 측정불응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정안의 법정형이 이들보다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항공업무 및 운전은 약물의 영향 아래 수행할 경우 타인의 생명·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한 검사와는 제도의 목적과 검사대상의 직무상 특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검사 불응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검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측면이 있음. 또한 개정안은 마약류 불법투약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응낙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검사불응죄의 적용대상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개정안에 따른 검사요건과 검사방법이 대상자에게 미치는 부담 및 유사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처벌요건과 법정형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벌칙의 적용범위와 하위법령 위임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안 제41조의2제1항은 제3조·제4조 또는 제5조제1항 위반 중 마약을 흡연·섭취하거나 자신에게 사용 또는 투약한 경우로 검사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 제64조제17의2호에는 이러한 한정이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검사응낙의무와 검사불응죄의 적용범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안 제41조의2제1항은 타액 간이검사 등 검사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다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검사방법과 절차에 관한 위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다.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마약류 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 및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며, 합법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일반인의 범죄 행위 적발 및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개정안 제41조의2제3항에서 검사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수정할 필요
- 개정안 제64조(벌칙) 제17의2호는 마약류를 흡연·섭취하거나 자신에게 마약류를 사용 또는 투약한 경우에 한정하도록 수정하여 개정안 제41조의2제1항과 일치시킬 필요

□ (대한의사협회) 동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자 등의 불법적인 마약류 사용을 방지하고 마약류의 적정한 취급·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이나, 사법경찰관리에게 마약류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검사 불응 시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하는 것은 검사 대상·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검사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될 우려가 있음.

□ 특히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사 대상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검사 대상과 검사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검사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법절차 등 충분한 절차적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의료용 마약류는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의료인은 진료과정에서 이를 처방·투약하는 등 업무상 의료용 마약류를 적법하게 취급하고 있음. 이러한 의료현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마약류 취급·처방 이력이나 단순한 신고·민원 등을 불법 사용을 의심할 수 있는 사유로 폭넓게 활용할 경우 적법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인까지 불필요한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음. 이는 의료인의 정당한 마약류 처방·투약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환자 진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또한 동 개정안은 마약류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실제 불법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불법 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 불응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검사 대상자의 기본권 제한을 형사처벌과 연계하여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검사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검사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 사유 및 대상자 선정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규정하고, 검사 실시 전 검사 사유와 절차를 대상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적법절차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반복적·자의적인 검사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통제와 함께 검사에 대한 이의제기 등 대상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사법경찰관리에게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여하고 검사 불응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검사 대상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로서 적절하지 않음. 이에 사법경찰관리의 마약류검사 권한 부여 및 검사 불응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동 개정안에 반대함.

□ (대한약사회) 마약류를 직접 취급하는 보건건료인 및 종사자의 불법 자가 투약이나 중독 상태에서의 조제·투약 행위는 국민 보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함

□ 그러나 법문상의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라는 표현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악의적인 악성 민원인이나 악의적 제보, 단순 정황만으로 일선 약국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 간이검사를 강제할 위험이 있음. 이는 선량한 약사 및 약국 종업원의 인격권과 수사상 영장주의 원칙을 침해하고 정상적인 약국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음

□ 따라서 법률에서는 검사 개시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NIMS상의 비정상적인 수량 불일치 등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범죄 혐의 등 검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마약류 검사 거부에 형벌을 부과하는 강제수단을 두는 경우에도,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검사 과정에서 건강상 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를 거부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

음.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
하도록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4